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3. 10 선고 2019가단1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자현,공익법무관 김경록

피 고 B 조합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0. 2. 18

판결 선고 2020. 3. 1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8,016,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1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97. 2. 21. 피고로부터 2, 000만 원을 대출받았고, 1997. 3. 29. 피고에게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진주시 D아파트 E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,800만 원,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.

또한 원고는 2002. 10. 23.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,같은 날 피고에게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차 채권최고액 990만 원,채무자 원고,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

나. 한편 F은 2009. 6. 8. G에게 4, 000만 원을 변제기 2009. 7. 8., 이자 월 3%로 정 하여 대여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대여금'이라 한다),원고와 H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F은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채무자 원고, 채권최고액 4,000만 원,채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
다. F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1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임의경매절차'라 한다)에서,피고는 2014. 5. 13.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38,016,628원(= 2순위 37,900,000원 + 4순위 116,328원)을 배당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배당금'이라 한다)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3, 8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.

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을 얻고,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,016,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가.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나 담보제공자(경매목적물 소유자)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53230판결 참조).

나. 앞서 본 사실,갑 제3호증,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,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F은 99,178,082원(= 원금 40,000,000원 + 이자 59,178,082원)의 채권을 신고하고 그 중 합계 41,367,918원(: 3순위 40,000,000원 + 4순위 1,367,918원)만을 배당받은 사실,원고는 F을 상대로 주채무자 G이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변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(이 법원 2015가단7073호),이 법원은 G이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F으로부터 이율을 49% 내지 50%로 정하여 합계 68,200,000원을 차용하였고 G이 F에게 변제한 합계 75,870,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외 다른 채무 원리금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, 2015. 12. 1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.

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 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F이라고 할 것이어서,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람,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:결·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지희